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입후보예정자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개설 운영 = TV토론을 통한 유권자의 후보자 비교·선택을 돕고자 개설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및 구·시·군의 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국적 규모로는 처음으로 개설되는 이번 강좌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2월 4일) 시점에 맞춰 전국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된다.

권역별 실시 일정을 보면 수도권은 2월 15일 서울(MBC 아카데미)에서, 충청권은 2월 17일 대전(대전MBC스튜디오)에서, 호남권은 2월 19일 광주(광주MBC 스튜디오)에서, 영남권은 2월 25일 경남(경남MBC창원스튜디오)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후보자가 TV토론회에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토론 요령, 마이크·카메라 적응요령 등에 관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자들이 직접 모의 방송토론을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자세한 강좌일정 및 내용과 신청방법 등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시·도 교육감선거 후보자,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강좌를 통해 제6회 지방선거 선거방송 TV토론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견을 쉽게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입후보예정자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개요 1부.
2.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조문 1부.

[붙임 1]

「입후보예정자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개요

① 개최일정 등

구 분 (권역)	개최일자	참가신청 마감일	주 관 토론위원회	대 상 지 역 (대상 시·도토론위원회)	교 육 장 소
수도권	2. 15(토)	2. 5(수)	서울 (su.election.go.kr)	서울, 인천, 경기, 강원	MBC아카데미 (서울)
충청권	2. 17(월)	2. 7(금)	대전 (dj.election.go.kr)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전MBC 스튜디오
호남권	2. 19(수)	2. 7(금)	광주 (gj.election.go.kr)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MBC 스튜디오
영남권	2. 25(화)	2. 14(금)	경남 (gn.election.go.kr)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경남MBC 창원스튜디오

②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선발인원 : 권역별 50명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해당 권역을 주관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담당자에게 e-mail 발송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한 때에는 추첨으로 선정

③ 주요 강좌내용(소요시간 : 5시간 30분)

- 선거방송토론의 이해
- 마이크·카메라 적응
- 이미지 컨설팅
- 생방송 TV토론시 빈발하는 실수사례 및 예방요령 설명
- 스튜디오를 활용한 TV토론 체험 등

④ 교육방법

- 지정 강의실과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
- 카메라 적응훈련 및 TV토론 체험은 권역별 2~3개 반으로 구분하여 실습 위주 교육 실시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조문

공 직 선 거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생략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⑭생략